

서울특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

○ 존경하는 김길영 위원장님!

그리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선배·동료 위원님 여러분!

국민의힘 중랑구 제4선거구 민병주 의원입니다.

○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.

○ 본 조례안은 2024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「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기본계획 내용, 특별정비구역 지정 및 수립, 리모델링사업 관련 특례, 공공기여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.

○ 1960년대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으로 도시지역에 대규모의 인구가 유입되며 주택난이 발생하였으며, 정부는 1990년대 주택 200만 호 건설계획 등을 발표하며 신도시 건설 및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 계획도시 개발을 통해 주택난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.

○ 그로부터 약 34년이 경과한 이들 계획도시에는 현재 주거환경 악화와 기반시설 노후화 등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며, 이에 정부는 '24.4월 「노후계획도시 특별법」 등 관련 법령을 마련하였습니다.

- 서울시의 경우 신내·가양 등촌 등 총 11개 지역 13개 택지개발지구에 「노후계획도시 특별법」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나, 현재 이들 지역에 추진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등 기존의 방식으로는 광역적이고 체계적인 정비를 하기에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.
- 「노후계획도시 특별법」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조건에 따라 안전진단 면제, 용적률 상향, 용도지역 변경 등 각종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고, 통합정비방식을 통한 사업비 절감 효과,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 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.
- 따라서 이번 「서울특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 제정을 통해 서울시 내 대규모 노후 택지를 대상으로 한 효과적인 정비 방식의 확보가 필요하며, 지역 주민들에게는 지역에 맞는 합리적인 사업 추진방식에 대한 선택지를 넓혀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 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바탕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